

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

- 지금부터 「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- 먼저 본 폐지조례안은 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제4항 및 「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」 제18조의2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에 의해 접수되었으며('24.3.21.), 7개월간의 청구인 서명 진행 후('23.5.11.~ '12.15.), 총 3만 3천 908명의 청구인명부가 제출되었고,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2만 7천 435명의 유효서명이 검증 완료되었습니다. 이후 서울시의회 법제담당관에서 동 폐지조례안의 수리 위법성 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후 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제3항에 따라 본 의장이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.

□ 동 폐지조례안에 대한 청구인의 취지를 말씀드리면,
위 조례는 중증장애인과 경증장애인을 구분하지 않고 장애인의 탈시설 정책을 추진하는 내용으로서,
결과적으로 의사 표현 및 지역사회 정착이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을 시설로부터 추방함으로써 오히려 중증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.

□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,
무엇보다 현재 동 폐지조례안을 둘러싼
수많은 쟁점과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
의원님들께서는 동 폐지조례안의 발의 취지를 살피시어
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
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